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자 료



2020. 6. .

서울특별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성연입니다.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우리 교육청에는 교직원단체 뿐 아니라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노동조합, 교육공무직노동조합도 활동하고 있으나, 현행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을 교직원단체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에도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체 간 형평을 고려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규는

-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제1호 입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원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기관을 ‘교직원단체’에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교육공무직노동조합을 포함한 ‘교직원단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제1조, 제2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